



고용노동부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건설공사 기간 연장 관련 법령 개정 안내

1. 귀 기관(단체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**공사기간 연장을 요청**할 수 있는 **사유***에 **폭염·한파**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개정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0조(건설공사 기간의 연장) 규정이 '26. 10. 27.자로 시행되었습니다.
* (기존) 태풍·홍수 등 악천후, 전쟁·사변, 지진, 화재, 전염병, 폭동 등
3.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은 장마, 폭염, 한파 등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.
4. 귀 기관(단체)에서도 소속 회원 및 회원사가 해당 법령을 준수하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 게시, SNS 알림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안내·전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,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< 산업안전보건법 >

개정 전	개정 후('26.10.27. 시행)
제70조(건설공사 기간의 연장)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 1. 태풍·홍수 등 악천후, 전쟁·사변, 지진, 화재, 전염병, 폭동,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70조(건설공사 기간의 연장)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 1. 태풍·홍수· 폭염·한파 등 악천후, 전쟁·사변, 지진, 화재, 전염병, 폭동,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※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law.go.kr>)에서 확인 가능. 끝.

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건설안전 협의회 등

건설훈합회					
주무관	이재은	서기관	이상혁	건설훈합회	
			독과장	황효정	
협조자					
시행	건설훈합회	2026. 10. 28.	접수		
우 30148	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, (반곡동 88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	/ www.moel.go.kr			
	본부)				
전화번호	044-202-8940	팩스번호	044-862-8075	/ jaeun17@korea.kr	/ 비공개(7)